

# (사)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지회 및 지부설치 운영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아시테지 한국본부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 제2조에 의거 광역시, 도 지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재지) 광역시, 도 지회는 해당지역에 소재지를 둔다.

제3조(지회설치 및 취소)

- ① 지회는 회원자격규정에 의거하여 해당지역에 단체회원 5개 단체, 또는 개인회원 10인이상을 확보하여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설치한다.
- ② 지회운영에 현저한 하자가 있을 때는 본부 이사회의 결의로 지회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③ ②항에서 언급한 현저한 하자는 제4조에 근거한다.

## 제 2 장 구 성

제4조(권리와 의무)

- ① 지회회원은 본부 및 지회 운영발전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.
- ② 지회는 본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지회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그리고 업무의 집행사항 및 지회 회원 단체의 공연내용 등을 매년 1월 마지막날까지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지회는 회원(개인, 단체)의 입회 및 탈회 등 변동사항을 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지회는 매년 12월 31일자 현재시점의 소속회원명부를 작성하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소속회원으로부터 납입 받은 회비 중 30%는 본부에 송금하고 70%는 지회운영경비로 사용한다.

## 제 3 장 임 원

제5조(임원)

- ① 지회에는 지회장 1인, 부지회장 2인 이내, 이사 8인 이내, 감사 2인을 두며 지회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.
- ② 지회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지회는 선출된 임원명단을 선출 후 3주이내에 본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무국) 지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, 사무장 1명과 약간 명의 직

원을 둘 수 있다.

제7조(임기) 지회임원의 임기 및 자격은 본부 회원관리규정에 준하는 자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(임원의 자격) 지회임원의 자격은 본부 회원관리규정에 준하는 자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9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본부 정관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.

제10조 본 규정은 본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1. 2009년 12월 22일 이사회 의결
2. 2014년 9월 22일 이사회 의결